

성실한 납세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2024년 신고안내

# 해외주식과 세금

(개인투자자용)



## 목 차

I. 해외주식 투자 시 세금문제 .....	1
II. 해외주식 취득 시 세금문제 .....	5
III. 해외주식 보유 시 세금문제 .....	6
IV. 해외주식 처분 시 세금문제 .....	8
V. 해외부동산주식 관련 세금문제 .....	17
VI. 해외투자 관련 세법상 과태료 정리 .....	18

# I. 해외주식\* 투자 시 세금문제

\* 외국에 있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소법 제94호제1항제3호다목, 소령 제157의3)으로서,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내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위탁기관이 발행한 위탁증권을 포함)으로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1

## 해외주식 투자방법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 거주자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에는 직접투자방식과 간접(집합)투자방식이 있습니다.

- **해외직접투자방식(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이란 해외에 신규 법인·공장 설립 및 지분인수를 통해 현지 투자대상 기업의 직접경영 및 사업관리에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행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허용하는 해외직접투자 방법으로는 ①**외화증권취득**, ②**외화 대부채권취득(금전대여)**, ③**해외영업소 설치** 등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외국환거래법 제3호제1항제18호)

※ **해외직접투자 개념**(외국환거래법 제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 (정의) 거주자\*가 하는 ① 또는 ②의 거래·행위 또는 지급

\*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제3조제1항제14호)

①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

(i)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

\*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도 임원파견, 1년 이상의 매매계약 체결, 기술제공 등의 계약 체결, 해외 건설 등 수주계약 체결에 해당하는 관계수립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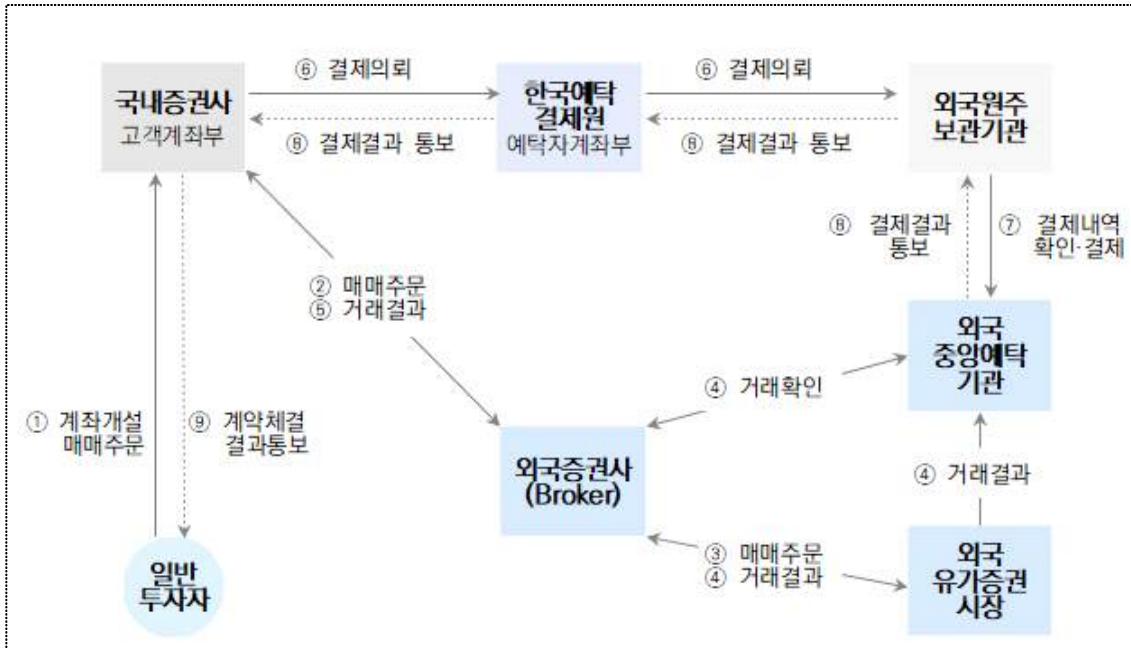
(ii) i에 따라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추가취득

(iii) i에 따라 투자한 외국법인에 상환기간 1년 이상의 금전 대여

② 외국에서 영업소(지점·사무소 등)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

- **해외간접투자방식(FII : Foreign Indirect Investment)**이란 투자대상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투자자본에 대응하는 배당금이나 이자수입의 획득만을 목적으로 국내증권사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해외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 우선, 거주자가 우리나라 증권사에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한 후 증권사의 인터넷 주식거래 시스템 등을 이용한 거래흐름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다음은 해외증권·채권 등의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해외펀드<sup>1)</sup>와 역외펀드<sup>2)</sup> 등에 가입하여 이익을 분배 받는 투자방식이 있습니다.

- 1) 국내 자산운용사가 국내법에 따라 설정하여 운용하면서 해외자산에 투자(기준가격 원화 표시)
- 2) 외국 자산운용사가 외국법에 따라 설정하여 운용하면서 해외자산에 투자(국내에서 판매)

※ 해외주식투자전문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91조의17, 조특령 제93조의3)

□ 적용요건

- 해외 상장주식에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일 것
- '16.1.1. 이후 '17.12.31.까지 가입(매수)할 것
- 납입원금 1인당 3천만원 이내일 것

□ 세제지원

- 가입일로부터 10년간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이와 함께 발생하는 환차익을 비과세

- 집합투자기구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되고 자세한 사항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법령 → 금융/금전 → 금융투자자(펀드) → 집합투자기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설정·설립국에 따른 분류

- **국내펀드**(역내펀드/ Onshore Fund)  
국내 법령에 따라 설정·설립되고, 국내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펀드
- **외국펀드**(역외펀드/ Offshore Fund)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설립되고, 외국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펀드  
(자국 내에서의 규제를 회피하고 유리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외국에서 펀드 설정·설립)

### 2) 법적 형태에 따른 분류

- **신탁형 펀드**  
계약형 펀드라고도 하며,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와 신탁업자간의 신탁계약에 의거 설정되는 펀드를 의미. 법인격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신탁업자가 펀드와 관련된 제반 법적 행위를 수행
- **회사형 펀드**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등 회사형태로 설립되는 펀드를 의미하며, 펀드자체가 법인격이 있음. 대표적인 예로는 투자회사(뮤추얼펀드), 사모투자 전문회사\*가 있음  
※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투자받는 공모와 달리 49인 이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로, 회사의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 등에 투자하여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개선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합자회사
- **조합형 펀드**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등 조합형태로 설립되는 펀드를 의미하며, 신탁형 또는 회사형과는 달리 펀드투자자인 조합원의 투자성향이 강조되는 펀드

### 3) 투자대상자산에 따른 분류

- **국내투자 펀드** : 국내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 **해외투자 펀드** :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2

해외주식 취득·보유·처분단계별 발생하는 세금문제가 궁금합니다.

□ 해외주식 관련 각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납세의무는 아래와 같으며 단계별 자세한 사항은 취득·보유·처분별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취득단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증여세 해당여부(자금출처 소명)</b></li> <li>- 타인(부모 등 친족 포함)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해외주식을 취득한 경우 동 자금을 증여받은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li> </ul>	
<b>보유단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b></li> <li>-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및 같은 법 기본통칙 3-0-0-1에 따라 해외 주식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을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li> <li>-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외의 신탁의 이익은 소득의 원천에 따라 이자·배당소득으로 신고·납부</li> </ul>	
<b>처분단계*</b>	<b>직접 투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양도소득세 등 신고·납부의무</b></li> <li>- 「소득세법」 제118조의2~4, 제118조의6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li> <li>- 현지국가에서 납부한 해외주식 양도소득 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세액 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단, 조세조약 상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 내용 확인 필요, p.9 참고)</li> </ul>
	<b>간접 투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b></li> <li>- 「소득세법」 제118조의2~4, 제118조의6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li> <li>-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 소득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식에 따라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li> <li>-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외의 신탁의 이익은 소득의 원천에 따라 이자·배당, 양도소득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신고·납부</li> </ul>

\*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해외주식 취득·보유·처분단계에서 각각 아래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다음해 6월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의무

〈 해외직접투자 관련 제출대상 자료 〉

서식명	제출요건
①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의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②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① 해당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 지분율 10% 이상 &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인 경우 ㉡ 직·간접 지분율 10% 이상 & 피투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③ 손실거래 명세서	• ②-㉡ 해당 & 단일 사업연도 거래 건별 10억 원 이상 손실금액이 발생하거나, 최초 손실발생 후 5년간 누적 손실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
④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나목의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 II. 해외주식 취득 시 세금문제

1

해외주식을 취득할 때 국내에 내는 세금이 있는지요?

- 해외주식을 본인의 자산으로 취득하는 경우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 해외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사인증여 제외)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국조법 제35조제2항)

2

미성년자 등이 해외주식을 취득한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수 있나요?

- 세법에서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취득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상증법 제45제1항)  
  
따라서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증여추정 제외(상증법 제34조제1항)

-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에서 제외합니다.

☞ 증여추정 제외 : 입증하지 못한 금액 < MIN(취득재산가액×20%, 2억원)

### Ⅲ. 해외주식 보유 시 세금문제

#### 1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나요?

□ 우리나라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해외주식을 소유함에 따라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소법 제17조제1항제5,6호)

소득 원천	소득 구분	근거규정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배당 (조약상 제한세율)	소법§17①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배당 (조약상 제한세율)	소법§17①5 소령§26의2②

#### 2 해외주식 배당소득을 원천지국에서 이미 원천징수했으나 국내에서도 원천징수 하는 경우 이중과세가 아닌가요?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서 이미 원천징수하였다면, 국내에서 해당 배당소득을 대리 지급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국내세법에 의한 세액(14%)에서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원천징수하므로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법 제127조제1항·제5항, 소법 제129조제4항)

※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외국소득세액의 범위 (원천세과-485, 2012.9.18.)

-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외국소득세액은 국외에서 조세조약 등에 따라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된 세액(그 부가세액 포함)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며,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함
- \* 상기 사례는 한·일 조세조약에 따른 것으로, 조세조약 체결국별 적용 대상조세에 부가세(surtax) 등 포함 여부는 별도 검토 필요



**해외주식을 보유하여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 거주자의 연간 금융소득(소법 제16조·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로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소법 제14조제3항제6호)
- 거주자의 비과세 및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융소득(소법 제16조·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지만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은 거주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자가 국내투자회사에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원천징수 된 경우임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법 제57조)

## IV. 해외주식 처분 시 세금문제

1

거주자가 투자한 해외주식을 처분한 경우 어떠한 세금이 발생하나요?

- 거주자가 해외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소법 제94조)
- 해외주식(회사형 펀드 포함)을 처분한 경우 예정신고 없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만 하면 됩니다.(소법 제105조제1항)
  - 현지국가의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해외주식 양도소득 관련 외국납부 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 참고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즉, 국내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과세)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 고

조세조약 상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 내용

구 분		국 가	
원천지국 과세가능 (68개국)	부동산 주식 <sup>1)</sup> (40개국)	부동산 50% 이상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모로코, 몰타, 몽골, 미국, 방글라데시, 스웨덴,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sup>3)</sup> , 알바니아, 영국 <sup>4)</sup> , 에스토니아, 요르단, 우크라이나, 이란, 중국, 카타르, 핀란드, 필리핀 <sup>5)</sup>
		부동산 50% 초과	가봉, 대만, 바레인, 브루나이, 세르비아, 스위스 <sup>13)</sup> , 슬로베니아, 에티오피아, 에콰도르, 우루과이, 조지아 <sup>3)</sup> , 체코, 캄보디아, 케냐, 키르기즈, 투르크메니스탄, 폴란드
	부동산 주식 주요주주 주식 <sup>2)</sup> (21개국)	부동산 50% 이상	독일, 멕시코 <sup>6)</sup> , 미얀마(35%), 베네수엘라(20%), 사우디아라비아(15%), 스페인 <sup>7)</sup> , 오스트리아 <sup>8)</sup> , 이스라엘 <sup>9)</sup> , 일본, 칠레(20%), 콜롬비아, 파키스탄 <sup>8)</sup> , 프랑스
		부동산 50% 초과	베트남 <sup>17)</sup> , 싱가포르 <sup>15)</sup> , 아랍에미리트 <sup>16)</sup> , 인도(5%) <sup>14)</sup> , 캐나다 <sup>10)</sup> , 태국 <sup>11)</sup> , 파나마, 페루(20%)
	부동산 주식(75%) 비상장주식 (1개국)	카자흐스탄	
	과점주주 주식 (1개국)	이탈리아	
	1년 이하 보유주식 (1개국)	튀르키예	
	모든 주식(4개국)	룩셈부르크(기타소득), 브라질, 호주(기타소득), 홍콩	
거주지국 과세 (27개국)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덴마크, 라오스, 러시아,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sup>12)</sup> , 벨기에, 벨라루스, 불가리아, 스리랑카,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알제리, 오만,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튀니지,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피지, 헝가리		
양도전 최근 5년 중 거주자였던 개인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	네덜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영국, 캐나다		

- 1) 부동산 주식 : 통상 부동산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 2) 과점주주 주식 : 통상 25% 이상 지분 소유자의 주식
- 3)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 양도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의 창설 또는 할당에 연관된 인의 주요 목적 또는 주요 목적 중 하나가 그러한 창설 또는 할당에 의해 이 조항을 이용하는 것이었다면 적용되지 아니한다.(13조6항)
- 4) 영국 : 그 자산이 주로 타방계약국 소재 부동산 및 부동산 주식으로 구성된 조합 또는 신탁의 지분(13조2항나호)의 양도 포함
- 5) 필리핀 :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일방 계약국에 소재하는 조합 또는 신탁에 있어서의 이권의 양도로 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일방국에서 과세(13조4항)

- 6) 멕시코 : 산업상, 상업상 또는 농업상 활동이나 전문직업적 용역의 수행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아니함
- 7) 스페인 : 수취인이 양도이전 12월 기간 동안 그 회사 또는 법인체의 자본에 최소한 25% 직·간접으로 참여하였을 경우 양도 시 부과되는 조세는 이득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함(13조3항)
- 8) 오스트리아, 파키스탄 : 거주자가 지난 2년 동안 어느 때라도 동 법인의 자본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 하였던 경우 양도 시 부과되는 조세는 그 소득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오스트리아:13조4항, 파키스탄:13조5항)
- 9) 이스라엘 : 양도가 있기 전의 12개월 동안 어느 때라도 최소한 25% 이상 참여한 경우 양도 시 부과되는 조세는 소득의 10%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13조5항)
- 10) 캐나다 : 해당 가치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이 부동산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조합 또는 신탁에의 권리의 양도로부터 얻게 되는 이득 포함(13조4항나호)
- 11) 태국 : 이 항에 포함된 어떤 것도 회사, 파트너쉽, 신탁이나 재산이 사업 활동에서 사용하는 부동산과 주요하게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부동산과 재산의 관리사업과 관련된 회사, 파트너쉽, 신탁이나 재산에 적용할 수 없음 (13조4항가호)
- 12) 말레이시아 : 거주자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 원천징수절차 특례에 따라 과세
- 13) 스위스 : 상장주식, 기업구조조정 과정의 주식양도는 원천지국 면세
- 14) 인도 : '17.1.1. 이후 지급 분부터는 양도하기 전 12개월의 기간 중 어느 시점에 그 회사 자본의 최소 5%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원천지국 과세(전문개정 '16.9.12.발효)
- 15) 싱가포르 : 공인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제외
- 16) 아랍에미리트 : 부동산주식의 경우 공인된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주식은 제외, 과점주주 주식 원천지국 과세시 소득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개인인 경우 국내 과세(제26조 혜택의 자격)
- 17) 베트남 : '22.1.1.이후 지급 분부터는 부동산 주식을 제외한 다른 주식의 경우 회사에 대한 지분참가 비율이 최소 15%인 경우 원천지국 과세

※ 미국 거주자의 주식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비과세되나 다음 두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대상이 됨.(한·미 조세조약 제17조) 이 경우, 미국의 개인거주자가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그 개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됨.

- ① 특별조치에 의한 이유로 미국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법인소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보다 실질적으로 적고,
- ② 그 주식을 양도하는 미국법인의 자본의 25% 이상이 미국의 개인 거주자가 아닌 1인 이상의 인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는 경우

※ 미국거주자가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내국법인의 주식(부동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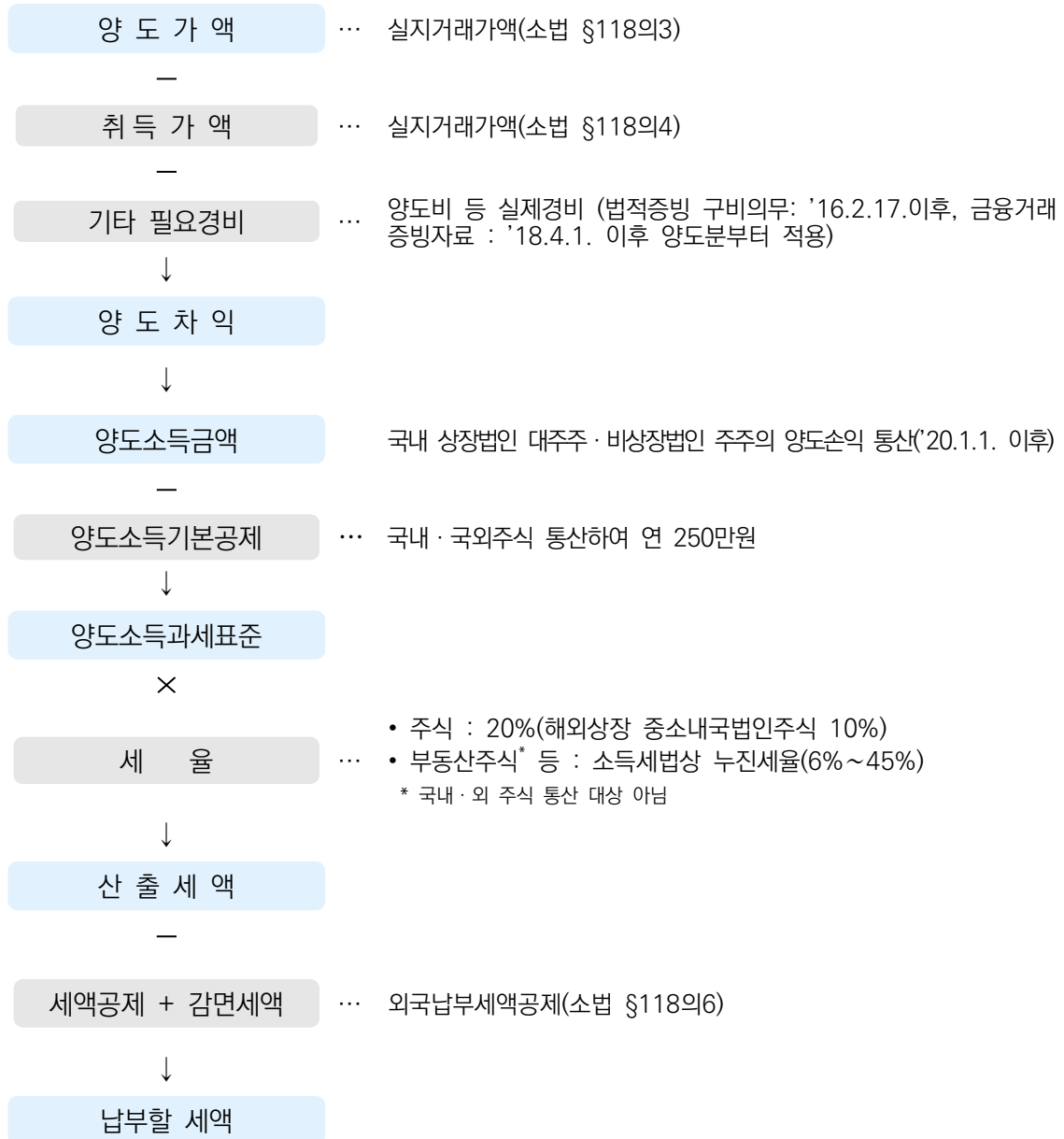
\* 한·미 과세당국은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을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상호합의하였고(한·미 과세당국간의 상호합의인 Announcement 2001-34,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합의(IRB 2001-16, '01. 4. 16)), 이에 따라 (구)재정경제부는 부동산주식 양도소득도 소득원천지국인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함.

미국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취득하는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179조제8항(현행 제14항)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제10항(현행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임.[재국조 46017-89, 2001.5.23.]

2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과 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으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 해외주식을 거래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른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 같은 과세기간의 해외주식·국내주식\* 거래에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다음해 5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20년도 양도분부터 해외주식의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손)과 국내주식의 양도차손(익)을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내주식은 상장법인의 대주주 양도분 및 비상장주주의 양도분에 한함

#### 〈'19년 개정세법 내용〉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소법 §94 등)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국내주식·해외주식을 구분하여 양도손익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주식*은 국내주식 간 손익통산만 허용</li> <li>* ① 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② 비상장주식</li> <li>○ 해외주식은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만 허용</li> </ul>	<input type="checkbox"/> 국내주식·해외주식을 합산하여 양도손익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주식·해외주식 간 손익통산 허용</li> </ul>
<input type="checkbox"/> 양도소득 기본공제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주식 : 250만원</li> <li>○ 해외주식 : 250만원</li> </ul>	<input type="checkbox"/> 국내·해외주식을 합산하여 기본공제금액 250만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해외주식 : 250만원</li> </ul>

〈개정이유〉 국내·해외주식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순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손익통산 허용  
 〈적용시기〉 '20.1.1.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 고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확정신고 계산 사례

□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국내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후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확정신고 하는 경우

○ 국외주식 차손을 국내주식 소득에서 차감\*하여 확정신고

\* (순서) 동일세율 적용 소득 → 다른세율 적용 소득(2 이상시 안분)

(천 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국내주식 (중소기업 대주주 외)	국내주식 (중소기업 대주주 외)	국외주식	계
양도소득금액	110,000	110,000	△67,000	43,000
기본공제	2,500	-	-	2,500
과세표준	107,500	-	-	40,500
세율	10%	-	-	10%
산출세액	10,750	-	-	4,050
기신고세액	-	-	-	10,750
납부할세액	10,750	-	-	△6,700

○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확정신고

(천 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국내주식 (일반법인 대주주)	국내주식 (일반법인 대주주)	국외주식 (일반법인)	계
양도소득금액	342,500	342,500	100,000	442,500
기본공제	2,500	2,500	-*	2,500
과세표준	340,000	340,000	100,000	440,000
세율-누진공제	25%-15,000	25%-15,000	20%	20%, 25%
산출세액	70,000	70,000	20,000	90,000
기신고세액	-	-	-	70,000
납부할세액	70,000	-	-	20,000

\* 국내·국외주식을 통산하여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만 적용(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서대로 공제)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동일종목을 수차례 취득 및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외화환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되는지요?

- 해외주식 거래 시 동일종목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양도한 경우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고(선입선출법) 양도차익을 산출합니다.(소령 제162조제5항)
- 다만,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 주식으로서 증권회사가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경우 이동평균법도 가능하며 연도별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국제세원-229, 2010.5.10.)
- 해외주식 거래와 관련된 외화환산은 다음에 정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의 인터넷사이트 (www.smbis.biz)의 오늘의 환율 및 기간별 매매기준율 등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분	환율적용시기
양도가액	양도대금이 입금되는 날의 환율, 수차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각 입금되는 날의 환율
필요경비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필요경비를 지출하여 결제대금이 출금되는 날의 환율, 수차에 걸쳐 지출하는 경우에는 각각 출금되는 날의 환율

#### ※ 해외주식 양도차익 외화환산 시 환율 적용 방법 등(국제세원-229 , 2010.5.10.)

-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해외주식을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자의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인을 위하여 과세연도별로 계속하여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며 제출서류는 무엇인지요?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다음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의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국세신고안내>양도소득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 ②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2)
    - 첨부서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필요경비 증빙 등)
      - 주식거래내역서
      - 양도 및 취득비용 증빙
      - 외국과세당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외국납부세액계산 증명) 등
- 거주자가 해외상장주식 등을 금융기관(주로 국내증권회사)을 통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금융기관이 확인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2) 및 필요경비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는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제84호서식 부표2)의 주요 항목이 기재되고, 금융기관이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요항목 : 양도 건별로 주식종목명, 주식종목코드, 주식종류코드, 양도 주식수, 양도일자, 주당양도가액, 양도가액, 주당취득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 기재 (취득유형 및 취득일자의 명시 불필요)
    - 금융기관의 확인 : “주당취득가액”의 평가방법과 작성근거를 명시하여 금융기관장 직인 날인
  - 양도소득 신고 및 납부계산서, 계산명세서, 세액공제신청서 등은 현행 세법 규정에 따른 법정서식을 이용하여 해당 증빙자료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법정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책/제도>세무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예시)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금융기관명		⑤금융기관사업자등록번호	
⑥금융기관주소			
⑦계좌번호	(계좌개설일 : )		

( )년도 ( )분기 양도소득금액 내역

#### 1.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양도일자별 구분 세부내역

⑧주식 종목명	⑨주식 종목코드	⑩주식 종류코드	⑪양도 주식수	⑫양도 일자	⑬주당 양도가액	⑭양도 가액 (⑪×⑬)	⑮주당 취득가액	⑯취득 가액 (⑪×⑮)	⑰제비용	⑱비용차감후 손익 (⑭-⑯-⑰)

#### 2.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주식종목별 내역

⑲주식 종목명	⑳주식 종목코드	㉑주식 종류코드	㉒양도 주식수 종목별 소계	㉓주당 양도가액 (㉒/㉒)	㉔양도 가액 종목별 소계	㉕주당 취득가액 (㉕/㉒)	㉖취득 가액 종목별 소계	㉗제비용 종목별 소계	㉘비용차감후 손익 (㉒-㉕-㉗)
<b>합계</b>									

- “주당취득가액”은 주식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또는 이동평균법 등)」으로 계산하였습니다.
- 원화환산금액은 매수,매도 결제일의 기준환율(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본 계산 내역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거래내역을 기초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장

(인)

## V. 해외부동산주식\* 관련 세금문제

\* (유의) 국내주식 양도손익 통산 대상에서 제외

- '해외부동산주식\*'을 취득·보유·처분 시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국내 세금문제는 대부분 '해외부동산'의 경우와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법인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

차이항목		해외부동산	해외부동산주식(지분)
보유단계	발생소득 종류	임대소득(필요경비 인정)	배당소득(필요경비 없음)
처분단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없음('08.1.1.부터)	적용없음
	적용세율	누진세율	누진세율 또는 단일세율
	과세권 배분	대부분이 양국 과세	조세조약에 따라 다름

- 조세조약상 부동산주식(지분) 처분에 대한 과세권 배분은 “조세조약 상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각국별 조세조약 적용요건이 상이하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해당 조세조약 원문(의정서 포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 해외 부동산주식의 취득·보유·처분 등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세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요?

-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주식을 취득·보유·처분하는 경우 각 단계별 납세의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각 단계별 납세의무

구 분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	
관련세목	증여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내용	취득자금 수증	배당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가액
적용세율	내국세법	14% 또는 6%~45% (누진세율)	기타자산 : 6%~45% - 특정주식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10%~50% (누진세율)
	외국세법	국가별로 상이	제한세율 등	국가별로 상이
국내과세효과	과세해당분 전액	세율차이분	세율차이분	국가별로 상이

\* 일반적인 해외주식의 경우 20%(또는 10%) 세율이 적용되지만, 부동산주식은 대부분 기타자산으로 분류되어 누진세율(6%~45%) 적용

○ 해외부동산주식 관련 단계별 발생소득에 대한 제세 신고의무

<b>취득단계*</b>	<input type="checkbox"/> <b>증여세 해당여부 (자금출처 소명)</b> ◦ 타인(부모 등 친족 포함)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해외부동산주식을 취득한 경우 동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
<b>보유단계*</b>	<input type="checkbox"/> <b>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b> ◦ 「소득세법」제3조 및 「동법 기본통칙」3-0...1에 따라 해외부동산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식에 따라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
<b>처분단계*</b>	<input type="checkbox"/> <b>양도소득세 등 신고·납부의무</b> ◦ 「소득세법」제94조~제118의8조에 따라 해외부동산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 증여(상속)한 경우 증여(상속)세 신고·납부

\*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해외주식 취득·보유·처분 단계에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다음해 6월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의무가

## VI. 해외투자(해외부동산 포함) 관련 세법상 과태료 정리

거주자가 해외투자(해외부동산 포함) 관련 제출대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한 까지 미(거짓)제출하거나, 세무서장의 제출(보완) 요구기한까지 미(거짓)제출할 경우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분	귀속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개 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건별 3백만원 (한도 5천만원)	건별 5백만원 (한도 5천만원)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18.12.31.신설 : 건별 5백만원(한도 5천만원)					
	해외부동산 명세서 <sup>3)</sup>	거주자별 취득가액 1%  (한도 5천만원)	물건별 취득가액 <sup>1)</sup> 1%	물건별 취득·운용·처분가액 10% <sup>2)</sup> (한도 1억원)				
미신고 해외자산 적발 시 취득자금 출처 소명	-	'18.12.31.신설 : 미(거짓) 소명금액 20%						

-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 제출분부터 물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제출의무가 있으며, 처분 명세서 제출의무 신설
- 해외부동산 취득·처분 명세서 관련 과태료 산정 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신고(보고)한 금액은 제외
- '22.1.1. 이후 자료 제출분부터 보유분도 제출의무가 (다만, 미(거짓)제출 과태료는 '23년 제출불이행부터 적용)

※ 상기 자료는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국제조세정보 > 발간책자 > 「2024년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 클릭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국세에 대하여 전화, 인터넷, 방문 등의 방법으로 문의·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 : 126(국번없이)    ■ 인터넷 : www.hometax.go.kr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36 (서호동1514번지)  
국세상담센터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실 (☎ 044-204-2815) 2024년 5월 안내

※ 본 안내서는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반적인 질문을 기준으로 한 해설서로 **구체적인 개별사례**에 대한 법 적용은 **관련 법조문을 재확인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